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09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천준호·민병덕·김 윤

박상혁 · 김현정 · 한민수

김남근 · 김용만 · 주철현

강준현 · 김동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하여 온 사유지 등 (이하 "사유지도로"라 한다)을 둘러싸고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충돌, 지방자치단체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토지매수청구 등 민원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특히 사유지도로에 도로·상하수도관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정비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. 또한 관리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지도로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함. 이는 주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,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일반 공중이 통행에 이용하는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사유지도로 관리가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국가 계획으로,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하고,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.
- 다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의 사유지도로 를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토지소유자등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(안 제7조).
- 라. 위험사유지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- 마. 사유지도로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사유지도 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적 분쟁에 앞서 대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바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).

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일반 공중이 통행에 이용하는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사유지도로"란 일반 공중이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.
 - 가.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유지
 - 나.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된 도로 중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도로. 다만,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도로는 제외한다.
 - 1)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
 - 2) 「사도법」에 따른 사도
 - 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·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로
 - 4)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도로

- 5)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도로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
- 2. "위험사유지도로"란 주민편의, 교통약자 보호,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지도로로서 제 7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사유지도로를 말한다.
- 3. "정비사업"이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관할구역 내의 위험사유지도로를 점유·사용하여 위험사유지도로의 정비를 위한 공사 및위험사유지도로 내의 시설물·공작물의 설치·유지관리·보수·개량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사유지도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유지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유지도로 관리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1. 사유지도로 관리에 관한 국가의 정책방향
 - 2. 제5조에 따른 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의 수립방향
 - 3. 사유지도로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· 운영에 관한 사항

- 4. 사유지도로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
- 5. 그 밖에 사유지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.
- 제5조(사유지도로 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 유지도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사유지도로 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사유지도로의 정비사업 실시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
 - 3. 사유지도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사유지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

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사유지도로 실태조사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유지도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다.
 - 1. 사유지도로 위치 · 지번 · 지목 · 면적
 - 2. 사유지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상태
 - 3. 사유지도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현황
 - 4. 사유지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· 공작물의 현황
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시·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시·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유지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유지도 로에 출입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.

- ⑤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・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위험사유지도로의 지정 및 정비사업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(이하 "도시계획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 내의 사유지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사유지도로를 지정·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이해관계인(이하 "토지소유자등"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 - 1. 토지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
 - 2.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해외에 거 주하는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사유지도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통행제한, 통행금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

- 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.
- 제8조(위험사유지도로 지정의 해제)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사유지도로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사유지도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사유 지도로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.
 -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

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.
- 제10조(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) ① 사유지도로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 - 1. 통행에 관한 사유지도로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분쟁
 - 2.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험사유지도로의 지정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사유지도로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④ 위원회 위원은 사유지도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위촉한다.
 - 1. 해당 시·도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 원
 - 2.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 직하고 있는 사람

- 3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- 4. 감정평가사,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5. 그 밖에 사유지도로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-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⑥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 시되며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
- 2.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
- 3.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 우
- ⑧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,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.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.
- ⑨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
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수 있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, 분쟁의 조정방법, 절차,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재정 지원)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